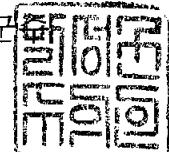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29
------------------	-----

제출일자 : 2011. 7.

제출자 : 달성군



##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진 기  
관에 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 목적 및 설립  
규정과 지도·감독 기준 등의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장학재단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재단의 설립 근거 명시 (안 제2조)
- 다. 정관변경의 승인 및 임직원 임명근거 조항 마련,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보고서 제출 및 승인조항 마련 (안 제  
 7조)
- 라.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군수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 (안 제8조)

## 4. 조례안 : 불임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2011. 5. 30. ~ 6. 20. - 의견없음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학회 육성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폭넓게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재단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①재단은 설립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
2.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인재육성 등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의 조성) ①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제5조(기금출연) ①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군수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감사 및 그 직원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제7조(승인 및 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요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 차입 등)
4.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5.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다음회계연도 2월 말까지)
6.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재 등) ①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0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 지출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